

의안번호	제74호
의결 연월일	2010년 월 일 (제296회)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0년 11월 1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1월 1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실국간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업무이관에 따른 직위조정
  -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 ⇒ 행정국장(안 제10조제2항)
  -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 ⇒ 정책기획관(안 제10조제3항제1호)
  - 간사를 예산담당관 ⇒ 자치행정과장(안 제10조제5항)
-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 : 없 음

### 6. 비용추계서 : 없 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과”를 “각 호와”로, 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”을 “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예산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·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

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 중 “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”를 “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』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대상)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 보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7조(신청 및 접수)· (생략)</p> <p>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심의)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.</p> <p>제9조(결과통보)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)·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·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이되고, 1인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·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</p>	<p>제4조(지원대상).....</p> <p>.....각 호의 어느 하나에.....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신청 및 접수)· (현행과 같음)</p> <p>·.....제1항에 따라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8조(심의).....제7조제2항에 따라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9조(결과통보).....제8조에 따른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)· 제8조에 따른</p> <p>.....1명.....2명...</p> <p>.....15명....., .....</p> <p>.....</p> <p>· .....</p> <p>1명은 행정국장이되고, 1명은.....</p> <p>.....</p> <p>·.....각 호와.....</p>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.당연직 위원 :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, 문화여성환경국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·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·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</p> <p>제11조(위원회 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12조(회의 운영)· (생략)</p> <p>· (생략)</p> <p><b>(신설)</b></p> <p>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1. 당연직 위원 : 보건복지국장, 문화여성환경국장, 정책기획관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·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.....</p> <p>· .....1명을 ....., .....자치행정과장.....</p> <p>제11조(위원회 기능).....각 호의 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회의 운영)· (현행과 같음)</p> <p>· (현행과 같음)</p> <p>·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·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제16조(실비보상) ..... 『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』가.....</p> <p>.....</p>